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21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구미시장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28.

주 문

1.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68,426,880원, 농어촌특별세 6,842,66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 9. 24. 설립되었고, C은 2009. 9. 24.부터 2011. 11. 21.까지 B의 사내이사였다.

나. B의 주주명부에는 C이 B의 설립당시부터 B의 발행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1. 11. 21. C과 사이에 B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당 10,000원, 합계 20,000,000원으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개서하여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개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B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4. 9. 15. 원고에게 2,2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8,426,8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842,66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4. 경상북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2. 불채택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68,426,880원, 농어촌특별세 6,842,6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3. 2.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15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B를 설립하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C은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개서한 것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고가 명의개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단서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B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B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각 제2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7. 2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8. 9. 26.부터 경산시 E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운영하다가, 2009. 9. 24. D의 일부 업무(인쇄 및 검사용역)를 수행할 별도의 회사로서 B를 설립하였다. 당시 B의 본점 소재지도 경산시 E이었다.

2) 원고는 2009. 3. 9.부터 D의 총괄부장으로 근무한 C에게 B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C 명의의 주금납입계좌로 2009. 9. 23. 원고 명의로 17,300,000원, 2009. 9. 24. C 명의로 2,700,000원을 입금하여 B를 설



립한 뒤 2009. 9. 28. 위 2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3) B은 2011. 5. 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B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1,52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C은 대표이사(법인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로서, 원고는 실경영자로서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C은 B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자, 2011. 11. 21.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B의 대표이사(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가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주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의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가 C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C은 실질주주인 원고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원고로 개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B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위 명의개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5-31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량

 판사 김정기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총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